

「여행업법」

(제 1 조-제 10 조)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7<1952>년 법률 제239호
- 공포일: 1952년 7월 18일
- 개정일: 2017년 6월 8일

원문	번역문
<p>第一章 総則</p> <p>第一条 (目的)</p> <p>この法律は、旅行業等を営む者について登録制度を実施し、あわせて旅行業等を営む者の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とともに、その組織する団体の適正な活動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旅行業務に関する取引の公正の維持、旅行の安全の確保及び旅行者の利便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p> <p>이 법은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며 구성하는 단체의 적정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 유지, 여행의 안전 확보 및 여행자의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第二条 (定義)</p> <p>この法律で「旅行業」とは、報酬を得て、次に掲げる行為を行う事業（専ら運送サービスを提</p>	<p>제2조</p> <p>① 이 법에서 "여행업"이란 보수를 받아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오로지 운송 서비스를 제</p>

供する者のため、旅行者に対する運送サービスの提供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する行為を行うものを除く。)をいう。

一 旅行の目的地及び日程、旅行者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運送又は宿泊のサービス

(以下「運送等サービス」という。)の内容並びに旅行者が支払うべき対価に関する事項を定めた旅行に関する計画を、旅行者の募集のためにあらかじめ、又は旅行者からの依頼により作成するとともに、当該計画に定める運送等サービスを旅行者に確実に提供するために必要と見込まれる運送等サービスの提供に係る契約を、自己の計算において、運送等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との間で締結する行為

二 前号に掲げる行為に付随して、運送及び宿泊のサービス以外の旅行に関するサービス

(以下「運送等関連サービス」という。)を旅行者に確実に提供するために必要と見込まれる運送等関連サービスの提供に係る契約を、自己の計算において、運送等関連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との間で締結する行為

공하는 자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이하 "운송 등 서비스"라 한다)의 내용, 여행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여행자 모집을 위하여 미리 또는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하고, 그 계획에서 정하는 운송 등 서비스를 여행자에게 확실히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운송 등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운송 및 숙박 서비스 외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운송 등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여행자에게 확실히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하는 행위

<p>三 旅行者のため、運送等サービスの提供を受けること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し、媒介をし、又は取次ぎをする行為</p> <p>四 運送等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のため、旅行者に対する運送等サービスの提供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し、又は媒介をする行為</p> <p>五 他人の経営する運送機関又は宿泊施設を利用して、旅行者に対して運送等サービスを提供する行為</p> <p>六 前三号に掲げる行為に付隨して、旅行者のため、運送等関連サービスの提供を受けること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し、媒介をし、又は取次ぎをする行為</p> <p>七 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付隨して、運送等関連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のため、旅行者に対する運送等関連サービスの提供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し、又は媒介をする行為</p> <p>八 第一号及び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付隨して、旅行者の案内、旅券の受給のための行政庁等に対する手續の代行その他旅行者の便宜</p>	<p>3.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매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p> <p>4.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하여 운송 등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개하는 행위</p> <p>5.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매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p> <p>7.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하여 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한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개하는 행위</p> <p>8.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하여 여행자의 안내, 여권의 수령을 위한 행정관청 등에 대한 절차의 대행, 그 밖에 여행자의 편</p>
---	--

<p>となるサービスを提供する行為</p>	<p>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九 旅行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行為</p>	<p>9. 여행에 관한 상담에 따른 행위</p>
<p>2 この法律で「旅行業者代理業」とは、報酬を得て、旅行業を営む者のため前項第一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代理して契約を締結する行為を行う事業をいう。</p>	<p>② 이 법에서 "여행업자 대리업"이란 보수를 받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この法律で「旅行業務」とは、旅行業を営む者が取り扱う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第十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他の旅行業者を代理して企画旅行契約を締結する行為及び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う第六項に規定する行為を含む。)又は旅行業者代理業を営む者が取り扱う前項に規定する代理して契約を締結する行為をいう。</p>	<p>③ 이 법에서 "여행업무"란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른 여행업자를 대리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6항에 따른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제2항에 따른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この法律で「企画旅行契約」とは、第一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八号(同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に掲げる旅行業務の取扱いに関し、旅行業を営む者が旅行者と締結する契約をいう。</p>	<p>④ 이 법에서 "기획여행계약"이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여행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p>
<p>5 この法律で「手配旅行契約」とは、第一項第三号、第四号、第六号(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七号(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八号(同</p>	<p>⑤ 이 법에서 "수배여행계약"이란 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p>

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係る部分に限る。)に掲げる旅行業務の取扱いに関し、旅行業を営む者が旅行者と締結する契約をいう。

6 この法律で「旅行サービス手配業」とは、報酬を得て、旅行業を営む者(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外国において旅行業を営む者を含む。)のため、旅行者に対する運送等サービス又は運送等関連サービスの提供について、これら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との間で、代理して契約を締結し、媒介をし、又は取次ぎをする行為(取引の公正、旅行の安全及び旅行者の利便の確保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行う事業をいう。

7 この法律で「旅行サービス手配業務」とは、旅行サービス手配業を営む者が取り扱う前項に規定する行為をいう。

第二章 旅行業等

第一節 旅行業及び旅行業者代理業

第三条 (登録)

旅行業又は旅行業者代理業を営もうとする者は、観光庁長官の行う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ぬ。

제8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여행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여행 서비스 수배업"이란 보수를 받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외국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한 운송 등 서비스 또는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 간에 대리로 계약을 체결·매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거래의 공정성, 여행의 안전 및 여행자의 편의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여행 서비스 수배업무"란 여행 서비스 수배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제6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여행업 등

제1절 여행업 및 여행업자 대리업

제3조(등록)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광청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第四条（登録の申請）

前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観光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又は商号若しく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 二 主たる営業所及びその他の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 三 旅行業を営も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企画旅行（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行うことにより実施する旅行をいう。以下同じ。）を参加する旅行者の募集をすることにより実施するものであるかどうかその他の旅行業務に関する取引の実情を勘案して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業務の範囲の別
- 四 旅行業を営も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旅行業者代理業を営む者に旅行業務を取り扱わせるときは、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当該旅行業務を取り扱う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 五 旅行業者代理業を営も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その代理する旅行業を営む者の氏名又は

제4조(등록의 신청)

- ① 제3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광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 및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기획여행(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의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의 설정을 감안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 구분
 4.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여행업자 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여행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그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여행업무를 취급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여행업자 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대리

<p>名称及び住所 2 申請書には、事業の計画その他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五条 (登録の実施) 観光庁長官は、前条の規定による登録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旅行業者登録簿又は旅行業者代理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観光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場合においては、遅滞なく、その旨を登録の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六条 (登録の拒否) 観光庁長官は、登録の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登録を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十九条の規定により旅行業若しくは旅行業者代理業の登録を取り消され、又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より旅行サービス手配業の登録を取り消され</p>	<p>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조(등록의 실시) ① 관광청 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여행업자등록부 또는 여행업자대리업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p>② 관광청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등록의 거부) ① 관광청 장관은 등록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에 따라 여행업이나 여행업자 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7조에 따라 여행 서비스 수배업 등록이 취소되
---	---

<p>、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当該登録を取り消された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取消しに係る聴聞の期日及び場所の公示の日前六十日以内に当該法人の役員であつ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ていないものを含む。）</p> <p>二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て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p> <p>三 暴力団員等（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又は同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でなくなつ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をいう。第八号において同じ。）</p> <p>四 申請前五年以内に旅行業務又は旅行サービス手配業務に関し不正な行為をした者</p> <p>五 営業に関し成年者と同一の行為能力を有しない未成年者でその法定代理人が前各号又は第七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p>	<p>어 그 취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와 관련된 청문일 및 장소 공시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p> <p>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하여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3. 폭력단원 등[「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3<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6호에 따른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8호에서 같다]</p> <p>4. 신청 전 5년 이내에 여행업무 또는 여행 서비스 수배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p> <p>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4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p>
---	--

<p>六 成年被後見人若しくは被保佐人又は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い者</p> <p>七 法人であつて、その役員のうちに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前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p> <p>八 暴力団員等がそ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者</p> <p>九 営業所ごとに第十二条の二の規定による旅行業務取扱管理者を確実に選任すると認められない者</p> <p>十 旅行業を営もうとする者であつて、当該事業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第四条第一項第三号の業務の範囲の別ごとに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財産的基礎を有しないもの</p> <p>十一 旅行業者代理業を営もうとする者であつて、その代理する旅行業を営む者が二以上であるもの</p> <p>2 観光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の拒否をした場合においては、遅滞なく、理由を付して、その旨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에 해당하는 자</p> <p>6.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 또는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7. 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p> <p>8.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p> <p>9. 영업소마다 제11조의2에 따른 여행업무취급관리자를 확실하게 선임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p> <p>10.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의 범위별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p> <p>11. 여행업자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대리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p> <p>② 관광청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第六条の二（登録の有効期間）	9

旅行業の登録の有効期間は、登録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とする。

第六条の三（有効期間の更新の登録）

旅行業の登録の有効期間満了の後引き続き旅行業を営もうとする者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観光庁長官の行う有効期間の更新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五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有効期間の更新の登録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条第一項中「登録番号」とあるのは、「登録番号並びに有効期間の更新の登録の年月日」と読み替える。

3 前条の登録の有効期間の満了の日までに更新の登録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請について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条第二項又は第六条第二項の通知があるまでの間は、当該申請に係る登録は、前条の登録の有効期間の満了後も、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

4 前項の場合において、有効期間の更新の登録がなされたときは、その登録の有効期間は、従前の登録の有効期間の満了日の翌日から起算するものとする。

제6조의2(등록의 유효기간)

여행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의3(유효기간 갱신 등록)

① 여행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청 장관의 갱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는 유효기간 갱신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 중 "등록번호"는 "등록번호, 유효기간 갱신 등록 연월일"로 대체한다.

③ 제6조의2의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 신청과 관련된 등록은 제6조의2의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유효기간 갱신 등록이 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第六条の四（変更登録等）

旅行業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旅行業者」という。）は、第四条第一項第三号の業務の範囲について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観光庁長官の行う変更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ぬ。

2 第五条及び第六条の規定は、前項の変更登録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条第一項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変更に係る事項」と、「旅行業者登録簿又は旅行業者代理業者登録簿」とあるのは「旅行業者登録簿」と、第六条第一項中「次の各号のいずれか」とあるのは「第九号又は第十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旅行業者又は旅行業者代理業者（旅行業者代理業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以下同じ。）は、第四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又は第四号（旅行業者代理業者にあつては、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そ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その旨を観光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観光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理したときは、第

제6조의4(갱신등록 등)

①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청 장관이 하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및 제6조는 제1항의 변경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 중 "다음의 사항"은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행업자등록부 또는 여행업자대리업자등록부"는 "여행업자등록부"로,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9호 또는 제10호"로 대체한다.

③ 여행업자 또는 여행업자대리업자(여행업자대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여행업자대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관광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す場合を除き、届出があつた事項を旅行業者登録簿又は旅行業者代理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営業保証金の供託）

旅行業者は、営業保証金を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旅行業者は、営業保証金の供託をしたときは、供託物受入れの記載のある供託書の写しを添付して、その旨を観光庁長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旅行業者は、前項の届出をした後でなければ、その事業を開始してはならない。

4 観光庁長官は、旅行業の登録をした場合において、登録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旅行業者が第二項の届出をしないときは、その定める七日以上の期間内にその届出をすべき旨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観光庁長官は、前項の催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定めた期間内に旅行業者が第二項の届出をしないときは、当該旅行業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④ 관광청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있는 사항을 여행업자등록부 또는 여행업자대리업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보증금의 공탁)

① 여행업자는 영업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는 영업보증금을 공탁한 때에는 공탁물 수납이 기재된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관광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제2항의 신고를 한 후에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④ 관광청 장관은 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행업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⑤ 관광청 장관은 제4항의 최고를 한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여행업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第八条（営業保証金の額等）

旅行業者が供託すべき営業保証金の額は、当該旅行業者の前事業年度における旅行業務に関する旅行者との取引の額（当該旅行業者が第三条の登録を受けた事業年度に営業保証金を供託する場合その他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場合にあつて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額）に応じ、第四条第一項第三号の業務の範囲の別ごとに、旅行業務に関する旅行者との取引の実情及び旅行業務に関する取引における旅行者の保護の必要性を考慮して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額とする。

2 旅行業者は、前項の国土交通省令の改正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施行の際に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当該国土交通省令の改正により供託すべきこととなる営業保証金の額に不足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不足額を追加して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営業保証金を供託する場合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旅行業の登録をした場合において、登録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の国土交通省令の改正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施行の日から三箇月

제8조(영업보증금액 등)

- ① 여행업자가 공탁할 영업보증금액은 그 여행업자의 전 사업연도의 여행업무에 관한 여행자와의 거래액(해당 여행업자가 제3조의 등록을 한 사업연도에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액수)에 따라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의 범위 별로 여행업무에 관한 여행자와의 거래 실정 및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상 여행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다.
-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행 시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국토교통성령의 개정으로 공탁하게 되는 영업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는 "제8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그

以内（その施行の日から三箇月を経過する日がその施行の日の属する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の終了の日の翌日から百日を経過する日前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百日を経過する日まで）」と読み替える。

4 旅行業者は、第一項の国土交通省令の改正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施行の際に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当該国土交通省令の改正により供託すべきこととなる営業保証金の額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超える額の営業保証金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営業保証金の取戻し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

6 営業保証金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債証券、地方債証券その他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有価証券（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振替債を含む。）をもつて、これ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7 営業保証金の供託は、旅行業者の主たる営業所の最寄りの供託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条（営業保証金の追加の供託等）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0일이 지나는 날 전인 경우에는 100일이 지나는 날까지)"로 대체한다.

④ 여행업자는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행 시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국토교통성령의 개정에 따라 공탁하게 되는 영업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액수의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⑥ 영업보증금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의 이체에 관한 법률」(평성13<2001>년 법률 제75호) 제278조제1항에 따른 이체채권을 포함한다]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⑦ 영업보증금의 공탁은 여행업자의 주된 영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旅行業者は、毎事業年度終了後において、その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額に不足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不足額を追加して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七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営業保証金を供託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旅行業の登録をした場合において、登録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十四日以内」とあるのは、「毎事業年度終了後において、その終了の日の翌日から百日以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旅行業者は、毎事業年度終了後において、その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額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超える額の営業保証金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4 前条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営業保証金を取り戻す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5 旅行業者は、第六条の四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額に不足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不足額を追加して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七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営業保

제9조(영업보증금의 추가 공탁 등)

① 여행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액수보다 부족하게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로 대체한다.

③ 여행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게 될 때에는 초과하는 액수의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④ 제8조제5항은 제3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여행업자는 제6조의4제1항의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액수보다 부족하게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証金を供託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7 旅行業者は、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供託している営業保証金の額が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額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超える額の営業保証金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8 前項の規定による営業保証金の取戻しは、当該営業保証金につき第十七条第一項の権利を有する者に対し六箇月を下らない一定期間内に申し出るべき旨を公告し、その期間内にその申出がなかつた場合でなければ、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営業保証金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事由が発生した時から十年を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9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その他営業保証金の取戻し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

第十条（取引額の報告）

旅行業者は、毎事業年度終了後百日以内に、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事業年度における旅行業務に関する旅行者との取引の額を観光庁長官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제5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 여행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경우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게 될 때에는 초과하는 액수의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반환은 그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6개월 이상의 일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에 따른 공고, 그 밖에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액의 보고)

여행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여행업무에 관한 여행자와의 거래액을 관광청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